



IO-WGCA(WGCAF / GCA) is Committed to Promoting Green Technologies!
Earth and humanity, Animal and plant conservation... Green Revolution begins!

IO-WGCA | INTERNATIONAL ORGANIZATION | GLOBAL WHQ.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O-WGCA On-line Office : IO-WGCA.ORG



헌 법

CONSTITUTION

IO-WGCA

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O-WGCA GLOBAL WHQ.

헌 법 (CONSTITUTION)

IO-WGCA

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제1장 총 칙

본 국제기구는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실천기구인 IO-WGCA 12개 대표부, 집행이사회, 실행 이사회, 운영 이사회, 대륙 별 본부, 14개본부, 7부7처, 글로벌 본부 및 세계 지원본부, 72지원기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세계 360 개국을 대신하여 에너지, 물류, 항만 조선, 우주항공, 개발 건설, IO-WGCA IGCA(A~Z 인증 분야 및 국제표준 녹색 분류코드 대, 중, 소, 세, 세세분류) 등 'IO-WGCA 기후환경헌법(이하 IO-WGCA 헌법이라 칭한다.)'의 국제법 포괄적 범위의 공무를 각 국가들이 비준한 자국 법 비

준 전 범위의 법률을 포괄 적 범위의 법률로 정하여 이 지구와 우주 다중 우주론 중성 미자론 무한 에너지 근원 전 분야와 물, 공기, 대지를 포괄 적 담보로 한 산업분류코드와 물류 코드를 국제 표준녹색분류코드 전 분야로 담보된 지재권을 탄소 배출 권으로 전환하여 담보한 근거로 협력하여 대를 이어 지구와 우주 모든 주주인 유기체 무기체를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보존 할 것이며 실천 이행할 것이다.

제1조 (명칭)

본 국제기구는 국제표준녹색기술 전 분야 포괄적 범위의 공무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발기하여 오세아니아 연방 15개국, 25개 속령의 국제협약을 근거하여 G77의장국이자 의장인 피지에서 오세아니아 연방국 대표들과 국가간 국제협약을 통하여 비엔나협약에서 논한 조약 법상 국제법상 정부간 국제기구 및 기후환경 헌법을 세계 최초로 수탁 등록한다. 대한민국에는 'IO-WGCA 헌법'이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등 국제 및 외국기관 즉, 국제기구로 등록한다. 명칭은 'IO-WGCA 헌법'에서 기초한다.

- 영문명 : IO-WGCA(GCA / IO-WGCO / WIPMO IO-WGCA)
- 한글명 :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 아이오더블유지씨에이 / 세계지적재산권관리기구 아이오더블유지씨오라 칭한다.

본 국제기구는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오세아니아 연합, 대한민국 및 중국 등 아시아, 아메리카 등 대륙별 각 국가에 'IO-WGCA 헌법'을 수탁, 기탁, 등록하여 전 세계의 국제표준녹색 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자산평가, 학위, 자격, 국제수의계약확인서 등에 대한 국제표준 녹색 분류 코드별 IO-WGCA 헌법의 포괄적 범위, 국제법 전 범위, 각 국가의 헌법과 법령 범위에서 국제 공무를 수행한다.

〈총 칙〉

본 국제기구는 비엔나 협약(조약 제1089호-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국제연합 기본협약(조약 제1213호-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IO-WGCA 헌법'을 실천 이행한다.

'IO-WGCA 헌법'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조약 제1265호-발효일 1995.1.1.) 및 한·미 FTA 제18장 8조 녹색기술상품 사용(국제표준 녹색기술-발효일 2012.3.15) 외 무한에너지(미국특허법 103조, 한국 특허법 106조 2의 1항) 등을 바탕으로 당시 G77의장국이면서 의장인 피지(오세아니아)국과 동시 및 개국에 국제공익신탁법에 근거하여 수탁 등기함으로써 녹색기술상품 실천기구 헌법으로 공포하였다.

또한, 녹색정책이 강제적인 대한민국에서 INGO-WGCA(IO-WGCA) 헌법상 목적사업 허가 및 국제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법을 근거로 수탁 등기하였으며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전 세계 녹색기술, 상품 발굴 및 선별을 위한 국제표준녹색검인증 및 이에 관련된 국제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로펌 교육지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녹색기술상품 실천 책무를 전 세계 360 개국을 대신하여 이행한다.

그러므로, 전 세계 국가를 대신한 국제표준녹색인증 특허 등 지재권과 전 세계 기후환경 관련 2000개 국제법, 해양법 150개, 무역관련 모든 국제법을 실천하고 있는 IO-WGCA의 국제녹색 검인증 시스템을 통과한 국제녹색인증서를 첨부하여 각 국가 법무부 검찰청소속 국제 인증인을 통한 국제 공증 후 외교부(법무부 아포스티유, 영사인

중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걸친 녹색기술,상품을 수출입시, WTO TRIPs에 따라 녹색법령이나 국가 정책이 강제적일 때 최혜국 적용을 받게되며, 이와같이 IO-WGCA는 세계지적재산권 관리기구(WIPMO-IO-WGCA)와 함께 녹색 실천을 이행한다 .

제2조(소 재 지)

본 국제기구는 유럽연합, 오세아니아연합, 아프리카연합, 대한민국 및 중국 등 아시아, 중남미, 북미 등 WTO 회원국 내에서 기후환경과 관련된 국제공무를 위하여 전 세계에 둔다.

제3조(목 적)

본 국제기구는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 실천으로 녹색 성장을 도모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기후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각 국가의 녹색경제를 발전시켜 세계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이 지구와 우주 유기체, 무기체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국제기구는 360개국에 국제공익신탁법을 근거로 수탁, 등록하여 각 국가에서 녹색기술상품 실천이 정책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국제녹색기술상품 실천에 대한 각 국가 책무 이행을 위하여 녹색 국토개발에 대한 교육과 예산 등의 기획, 기후 환경과 관련한 각 분야에 대한 녹색프로그램의 실현, 녹색기후환경 관련 전 분야의 국제 자격 및 학위 등 국제 녹색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 녹색 펀드를 활용하여 국가별 녹색도시 개발과 인프라개발을 지원함으로써 WTO 회원국과 개도국, 빈국, 섬나라, 부족 국가까지도 기후환경 관련 녹색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할 것이다.

‘IO-WGCA 헌법’은

WTO/TRIPs 협정, UNILC 국제법 확정 받은 ICC 확정 법령, 국제형사재판소 법령 관련법, ICC 국제상공회의소 관련 국제법과 이하 중재 재판소 법령을 포함한 국제법상 기후 환경 법, 해양법, 국제상거래법, 형사법, 국제조약 법, FTA, 국제지적재산권법, 유럽 에너지 법 등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제법과 국제협약을 포괄적 담보로 하고 있다.

본 국제기구는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 시대 전, 후를 통합하여 미자 학, 양자 학, 무한에너지, 에어엔

진 등 유엔 세계 지적 재산 소유권기구(WIPO)에 학술로 등록 되었거나 분류코드를 받은 녹색기술상품과 각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녹색기술상품에 대한 발명, 발견, 학술, 분류코드 등, 그리고 응용 합 녹색기술과 응용 합 녹색기술,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등의 녹색기술로 만들어진 1차, 2차, 3차 특허 된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 등을 이 지구와 우주에 공급한다.

또한,

녹색생활과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기후환경 관련 의, 식, 주 등을 녹색기술상품으로 개발 실천하여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환경 오염 및 연료 고갈 등에 시달리고있는 인류를 존폐 위기에서 구하게 될 것이다.

모든 WTO 서명

가입국 동시 발동의 시행 법령 제9조와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에 대한 협정 하의 특허법, 대통령령 20729(2008년 2월 29일 발효)의 8조, 미국 특허법 103조, UNFCCC 제1213호에서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는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의 사용 실천에 대하여 전 세계가 만장일치로 이행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에 따른 모든 연관된 제품에 대하여 IO-WGCA는 특허법 106조 2의 1항 및 TRIPs 제 31조를 적용, 공공의 비상업적인 경우 권리자 없이도 ‘강제수용’으로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을 발굴, 생산 할 것이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별 허가 및 등록 절차를 통하여 공급함으로써 책무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 등 국제법상 유엔 특별기구 WIPO에 녹색기술 및 학술로 등록된 녹색기술 등의 지적재산권을 국제기구로써 사용하도록 한다.

대한민국과 녹색법령 강제적 실천 국가는

조약법 이행 국가로써 녹색정책을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표준녹색기술이 학술로 등록된 일방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녹색기술상품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로 녹색기술 상품을 개발 사용해야 할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당사자

국가는 녹색기술실천(UNFCCC-제1213호 근거)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도국 G77국가, 최빈국을 포함한 속령 섬 나라 등 G20 모든 국가에 최혜국 대우(TRIPs법-즉시 당장 실행하자라는 근거)로 책무 범위의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녹색기술상품 실천으로 경제와 기후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국제기구 IO-WGCA(INGO-WGCA/WGCAF)는

녹색기술상품 실천헌법을 보유한 최초의 국제기구이며 지재권자이며 설계자인 설립 임원 집행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다.

본 국제기구의 주요업무는

기후환경 헌법을 근거로 한 검증을 통한 국제표준녹색 기술상품으로 녹색성장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각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녹색기술상품, 녹색산업혁명, 녹색 사회구현을 통하여 세계 인류의 삶과 질을 높여 국제사회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보유하고거나 관리하고 있는 모든 국제 자금

(녹색기술상품 자금, 사막방지 자금, 바다청결운동 자금, 환경개발 자금, 녹색도시개발 자금) 등을 활용하고 유치하여 IO-WGCA 글로벌 뱅크본부에서 각 국가와 한반도 통일 대비를 위한 녹색펀드를 발행한다. 이는 각 설립 국가와 각 해당 국제기구를 대신하여 IO-WGCA 설립임원집행이사회에서 지정하는 IO-WGCA 뱅크를 통하여 집행하게 되고, 국가별 IO-WGCA자산운영사 (SFC)에서 관리 운영하며, 각 설립국가와 해당 국제기구는 각 국가별 광역본부에서 녹색기술상품실천을 위한 전 세계 우량 국제녹색기술.상품거래소를 운영하게 되고, 그 이하 지역본부에서는 의, 식, 주, 공산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등 IO-WGCA IGC(IO-WGCA 국제표준녹색인증)된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에 대하여 WTO가입국, G20, G77, 부속국가, 빈국, 속령 등 전 세계 360개국에 같은 방법으로 공급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녹색경제성장에 필요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3항 녹색기술상품실천,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정부의 책무, 제6조 모든 기업의 책무, 제7조 모든 국민의 책무, 제8조 타법과의 관계 최우선)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IO-WGCA 헌법이념과 동일하다. 또한, 중국에서는 녹색정책을 5대정책으로 정책화하였으며 녹색정책에 에너지를 안보로 규정하는 등 전 인류의 책무로 국제기구 IO-WGCA(INGO-WGCA/WGCAF) 녹색기술상품 실천혁명을 시작한다.

IO-WGCA는

선진국 G20과 개발도상국 연합체 G77 및 최빈국, 섬 나라, 속령까지 국제법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한 IO-WGCA의 자체 헌법에 근거하여 기후 환경

과 인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지구와 우주의 모든 유기체, 무기체에 대한 감찰, 감시, 지도, 교육 공조조사 및 녹색 기술, 상품,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제표준녹색 검증, 인증을 통하여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실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O-WGCA 헌법 실천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이다.

IO-WGCA감찰은

전 세계 국가들이 녹색책무실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이는 헌법 목적사업 제 37번 ‘전 세계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공조 조사권을 실시함으로써...’를 근거로 지구와 우주 유, 무기체 보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원하도록 포함된 부분이다.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실천’은

전 세계 국가, 지방정부, 기업, 국민의 강제적 책무이며, G20은 물론이고 개도국, 최빈국, 섬나라까지 전 국토개발 등 사회 전 분야에 국제 검, 인증된 녹색상품과 녹색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IO-WGCA 헌법’은

WTO/TRIPs 협정, UNILC 국제법 확정 받은 ICC 확정 법령, 국제형사재판소 법령 관련법과 ICC국제 상공회의소 관련 국제법과 이하 중재 재판소 법령을 포함한 국제법상 기후 환경 법, 해양법, 국제상거래법, 형사법, 국제 조약 법, FTA, 국제지적재산권법 등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제법과 국제협약과 대륙 별 연합 법을 포괄적 담보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적재산권 협정에 관한 대통령 시행령과 시행 규칙 및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논한 책무 전 범위에 해당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제법 및 조약법에 근거하였으며 ‘IO-WGCA 헌법’의 목적과 일치하고 재난 안전관리 분야까지 포괄되어 있다.

또한, ‘유럽에너지법 1,2’를

‘IO-WGCA 헌법 부록 국제 에너지 법’으로 공포한다. 기후 환경 변화, 온실가스 감축 분야 국제 법과 이에 포괄된 국제금융, 글로벌 자산운용, 생활, 국토 교통, 건축, 인프라, 물류, 의료, 산업, 기술, 자원개발, 신재생 에너지, 소비 합리화, 에너지 소비 규제, 물 에너지 관리, 국민건강, 물 관리, 식수 안전 공급, 친환경 자동차, 자원 순환, 기술 선물상품, FX를 활용한 기술·상품 선물거래, 탄소 배출권 거래, 스톡옵션, 자산관리와 목적 법인을 활용한 기술 개발 분야까지 포괄하게 되었으며 이는, WTO 회원국 등 속령 등 FTA아포스티유에서 요구하는 각 국가의 강제 법

인 녹색 법령의 책무 범위에 적용된다.

‘IO-WGCA 헌법’에서는 기 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 전 분야별 녹색교육, 경력증명, 인증 제도를 통한 국제학위증명과 국제자격증명 및 국제녹색자금을 대한 국제금융 주선을 지원한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국제표준녹색 검증, 인증되어 국제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되어 IO-WGCA에 등록된 해당 목적사업 건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각 국가별 연구원이나 학계 등에게 국제검증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기술, 녹색상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추천 및 거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국제기구는 아래의 내용을 전 세계에 선언한다.

전 세계인의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국제표준 녹색기술과 상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없는 에너지원을 가능케 하는 것은 국제기구뿐만이 아닌 전 세계인의 당면과제이며 책무이다.

지구의 외기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석연료의 사용 및 해양생태계의 손상을 일으키는 해양 이산화탄소,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대기 방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녹색기술의 발명과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 사용 실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각 국가에서도 녹색정책은 필수적이고 이미 강제적이다.

‘IO-WGCA(IO-WGCO/GCA/WGCA/WGCAF/GTO) 기후 환경 헌법’은 개발도상국가 및 선진국가 내의 공익을 위해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되어 운영 중인 녹색기술에 대하여 검증, 인증 후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으로 전 세계에 보급하는 등 모든 국가의 녹색실천이 강제적일 경우 FTA에서 적용해야 할 범위와 목적에 부합하여 설계되었다.

이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과 건강, 고용, 소득과 생활, 성별 배제 또는 성차별, 교육, 주택, 식량 확보 및 빈곤 등을 포함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 요소 각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사실의 인지에서 비롯되었다.

미래 기후변화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상기후 후와 바이러스 등 대기의 불안정성, 더욱 따뜻하고 산성화되는 해양과 지진, 높아지는 해수면 등 지구의 이상 현상에 대처하는 것은 국제적 최우선 과제이며 더 늦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인류의 기술로 인하여 피해를 겪은 기후환경을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복원해야 하는 것이 인류의 사명이자 책무이다.

이로써 'IO-WGCA'의 주주는 지구와 우주의 모든 유기체, 무기체이며 주주는 다중우주론과 중성미자론, 무한에너지에서 논하는 범위의 책무와 그 범위를 논한 UN ILC에서 국제법으로 인정된 모든 범위의 법령이 각 국가에서 비준된 국제법 법령 범위에서 'IO-WGCA 기후환경 헌법'에 대하여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미래는 이 지구 유기체, 무기체를 위하여 모든 인류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지에 달려있다.

본 국제기구는 인류의 보금자리인 지구를 보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개발,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새로운 녹색기술의 도입에 대한 강제 및 필수적인 시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WTO, G77 국가 및 기타 국가들로 구성되는 본 국제기구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경쟁 및 독과점을 줄임으로써 세계 경제의 공평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에 국제기구 'IO-WGCA(INGO-WGCA/WGCA)'를 등록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규정에 따른 공동된 의무이며, 본 기구는 WTO 모든 국가 및 G77 회원국 내 안전한 형태의 무한에너지인 에어엔진, 수소에너지 개발을 가능케 하는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의 새로운 실천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기술적 지원을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권역적, 국가적 및 영역별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촉진에 대해 12 대표부, 14개 글로벌 본부, 글로벌 세계지원본부, 각 국가 본부들과 국제표준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개발도상 국가이며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있는 오세아니아 연방부터 시작하여 피지 정부와 G77 일부 국가에 'IO-WGCA 기후환경 헌법'을 수탁하여 등록된 본 국제기구 (IO-WGCA)의 탄생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의 진흥 및 장려, 가시화를 위해서 필수적이었으며, 보다 살기좋은 인류의 보금자리로서의 깨끗한 지구를 위해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기후환경에 관련된 강제적 국제법 등을 동원하여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검증된 신기술 도입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를 통해 개도국, 섬나라, 빈국, 부족국가 등에 세계적인 국제표준 녹색도시가 점차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WTO, G77, G20, UN 협력기구, 개도국, 섬나라, 부족국가 등 전 세계 모든 국가 및 기타 국가들로 구성되는 'IO-WGCA 기후환경 헌법' 동의 회원국은 에너지 부족

으로 인한 경쟁 및 독과점을 줄임으로써 세계 경제의 공평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은 이산화탄소가 없는 국제 녹색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각 나라의 녹색기술을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검증, 인증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는 등 각 국가의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녹색에너지 생산 및 사용의 새로운 방식 도입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분쟁 없는 평화 축진의 목적과 더불어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국가, 지방정부, 공기업, UN 협력기구, 각 기관 등 사회적 및 경제적 체제와 관계없이 'IO-WGCA 기후환경 헌법' 동의와 등록은 회원국으로 서명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고 모든 국가들은 이산화탄소가 없는 녹색에너지 생성 방법의 채택 및 촉진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최상의 노력을 하는 책무와 실천 의무를 갖게 될 것이다.

본 국제기구는 조화롭고 집약된 조치를 통해 각 국가의 국민 건강과 사회복지를 최우선시하는 국제협력을 확대하도록 국가 간 공동 협력 망 구축을 도울 것이다.

이는 국가의 지속사용 가능한 연료를 확보함으로써 획득될 것이고 G20, G77, 개도국, 섬나라, 부족 국가 등 국제 녹색 도시 및 인프라 건설 등에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모든 상품은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검증, 인증되어 수, 출입 시 국제표준 녹색 산업분류로 구분하여 기후환경 개선에 지원하도록 한다.

G77, 개도국, 섬나라, 빈국, 부족국가 회원국은 유해한 대기 중 탄소배출을 줄임과 더불어 경제적 독립성을 차려 강화하게 될 것이다.

본 국제기구는 재생 가능하고 이산화탄소가 없는 무한 에너지, 에어엔진, 수소의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국제 산업적 생산에 있어 개발도상국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형평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본 국제기구는 모든 회원 및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더욱 공고히 하며 전 세계 녹색에너지의 수요 충족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도출하는 의무를 가진다.

최종적으로 본 국제기구는 국제적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 운영 및 실천 책무 지침>

본 국제기구는 WTO 회원국 및 G20, G77, 부족국가,

섬나라 등 전 세계에 'IO-WGCA' 산하 특별기관과 지원 기관 등을 설립 및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IO-WGCA'는 녹색의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의 협력, 연구, 개발 및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사용실천 책무이행 촉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본 국제기구 'IO-WGCA 헌법'의 책임과 일치한다.

또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 하의 특허법과 대한민국일 경우 대통령령 20729호 (2008년 2월 29일 발효)의 8조, 녹색기술에 대한 WTO 서명 가입국 동시 발동의 시행법령 제9조에 근거한 선행기술의 조사에 일치하며,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기술 즉, 국제표준 녹색 기술상품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국제표준 녹색기술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위해 세부적으로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사용 효율성 기술, 청정 생산기술, 청정 에너지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융합기술 포함)을 포함한다.

'IO-WGCA 헌법'은 특허법 106조 1항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이익,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대체기술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생산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촉진 등 기 공표한 목적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IO-WGCA' 모든 구성원은 이에 동의한다.

전 세계 국제법이 포괄적 담보로 되어있는 'IO-WGCA 헌법'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 서비스, 기업, 학위, 자격, 국제평가, 국제거래)에 대한 국제녹색검인증 등 특허와 유엔 특별기구 WIPO에 등록된 녹색기술과 상품은 사용과 개발지에 사용됨에 있어 차별 없고 공평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 모든 주, 지방정부의 법인, 전 세계 인류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

'IO-WGCA 헌법'은 선진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의 정부 및 관련 공기관, 시민사회 및 사적 부문 기관들과 연계하여 변혁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계 회원국 내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인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 및 과학의 개발과 촉진은 탄소배출 에너지설비를 확연하게 감소시킴으로써 공익과 인류 건강을 도모할 것이다.

물리적 환경 또는 지구 생물권에 변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의 대규모 감소를 통해 본 녹색에너지 생산기술은 자연적 생태계의 복원 및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는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순응하고자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생태계로 하여금 식량생산의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고 한편으로는 무공해 및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 세계 국가의 대중에게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국제기구의 재무적 이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산업에 대한 하부 권한 이양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국제적 구호활동을 지원함과 더불어 대중의 건강과 복지 촉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저탄소 배출 기술을 사용하여 녹색의 친환경적 사업운영을 포함하여 건강한 문명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이는 녹색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해 국제표준 녹색기술을 활용하고 국가의 입법과 법률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모든 회원국 및 이하 밀접하게 연계된 지방정부, 공적, 사적 기관 내의 공공의 관심을 촉진시킬 것이다.

본 국제기구는 차별 없이 G20, G77, 개도국, 섬나라, 빈국, 부족국가 등 회원국 및 WTO 회원국 내 프로젝트와 관련한 물적, 인적 교환 및 협력 등을 포함한 녹색 기후환경 평화를 구축하고 촉진시킬 것이다.

<공고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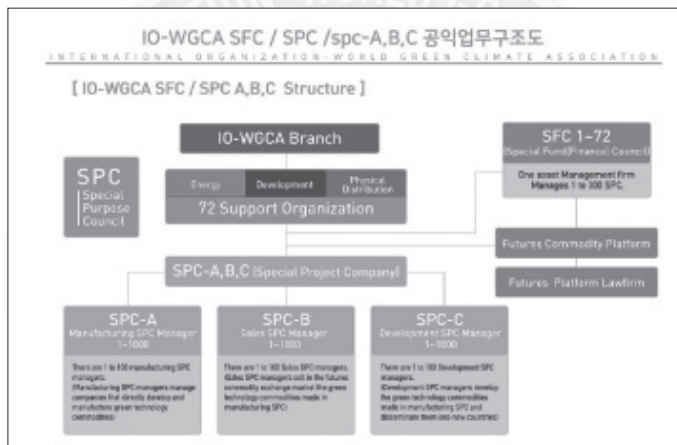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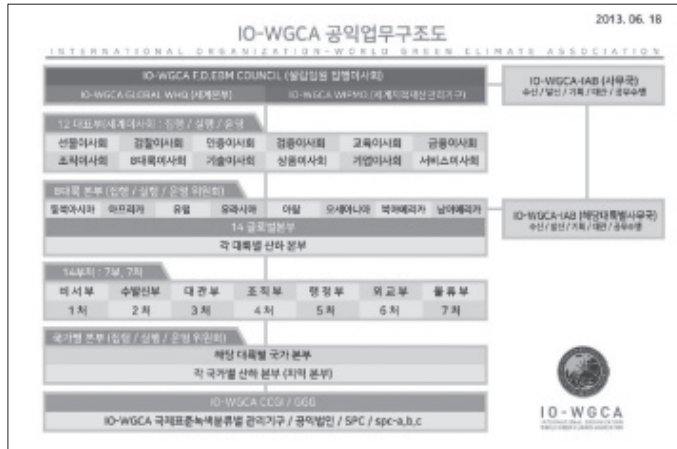
IO-WGCA 온라인 오피스 <http://io-wgca.org/> http://ingo-wgca.org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오피스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는 해당 본부 수도권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및 본부 온라인에 게재한다.

<업무구분>

본 항목의 국제기구 공익업무를 위한 구조도에 기준하며, CCGI, GGG 이하 SFC 및 SPC(Special Purpose Council) SPC-A,B,C.는 다음과 같은 구조(지역본부 단위)로 이루어진다.

단 기후환경 선물거래소 등 기후환경 중재 재판소는 해당 조직과 내부 규칙에 따르며, 각 본부별 은행은 IO-WGCA बैंक 정관에 기준한다.



제4조 (목적 사업)

본 국제기구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구의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등의 실질적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실천' 관련 국제기구 심포지엄(SYMPOSIUM) 포럼 등 국제회의 및 'IO-WGCA' 회원국의 국제공무를 위한 총회 개최한다.
2.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개도국, 부족국가, 섬나라, 빈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학위, 자격 등을 발굴하고, 국제표준 녹색기술 검증·인증(IO-WGCA IGC) 시스템을 통하여 국

제표준 녹색분류 코드별로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관계자 교육·훈련 및 방문지도 사업을 한다.

3. 'IO-WGCA' 녹색상품·선물거래소 사업과 국제녹색기금, 국제금융, 은행업 등록 및 국제펀드, 국제금융 거래 본부사업과 기후환경 중재재판소 지원사업 등의 총괄을 위한 기술 및 인력지원 사업을 한다.
4. 전 세계 360개국이 국제표준녹색기술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18개 시·도 지역의 허브기능 사업을 한다.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경영, 녹색개발 등의 실천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 및 보존을 전 세계 WTO 회원국 및 개도국, 빈국, 섬나라까지 지원 및 교육을 한다.

6. 전 세계 각 국가 등과 연계하여 아프리카, 아랍, 걸프지역 등 치안이 취약한 지역의 국제녹색 도시건설 프로젝트 진행 시 시장경호, 보안, 안전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 및 방문지도 사업을 한다.
7. 기타 본 국제기구의 'IO-WGCA 헌법' 내 포함된 목적 사업 1-43항 사업 및 지원사업을 한다.

〈IO-WGCA 헌법 목적사업 1~43항〉

1.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회의록 7호 첨부서류 근거와 IO-WGCA(WGCO/GCA) 헌법, 헌장, 선포문에 기재된 사업통합
2. 녹색기술상품으로 개발국 터키 개발사업
3. 녹색기술상품 선물·상품 무역·물류 사업
4. 녹색기술상품 개발, 건설사업
5.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기술 상품 개발
6. 삼백육십 개국 회원국 가입 협약비 수의 사업
7. 삼백육십 개국을 대상으로 녹색기술상품 인증표 검증 및 국제녹색인증발행
8.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내 국제표준 녹색기술의 교육, 문화, 예술, 과학교육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를 위한 대학 대학원 교육 및 운영 승인업무(온라인 대학 포함)
9.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A/GCA) 헌장, 헌법, 72지원기구 및 첨부된 본부 및 위원회 사업 및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사업
10.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A/GCA) 글로벌 세계행정지원 업무 및 국제금융거래 행정 각 도, 시, 지역별 본부 / 해양조선 행정본부 / 대륙별 본부(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랍)승인 및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 총괄 관리, 72개 (SFC1~72) 자산운용사 법인총괄, 각 자산운용사(SFC1)이하 100개법인(SPC1~100) 관리 감독업무, 상업법인 총괄 업무 및 사업관리
11.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와 제4, 5, 6, 7조 책무 이행 및 기본법 제6조에 해당한 모든 지원사업
12. 녹색성장, 자원순환, 농산물, 녹색산업,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경영 등 국제녹색인증 및 녹색기업 녹색의식주 제품 전분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세계화(대한민국은 일방

- 국으로써 TRIPs 에서 규정한 전세계 최혜국적용 및 지적재산권 적용국가 개도국 및 최빈국포함 즉시 당장 무조건 실천하게 하는 강제조항)
13.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녹색기술거래소 사업
14.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녹색기술상품, 국제녹색기금, 국제금융, 은행 업무 및 등록 및 국제펀드 국제금융 거래본부 사업
15.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녹색상품거래소 사업
16.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녹색선물거래소 사업
17.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자산운용행정본부 및 자산운용사 72개 관리 감독 및 대륙별 사업
18.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국내외 해양물류 국가개발 무역거래 지원 사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준한 사업 및 조직구성 사업
19.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와 관련된 전국행사 및 제주국제포럼 등 행사 사업
20. 전세계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 및 지원사업 및 DMZ IO-WGCA(WGCO/GCA/WGCAF) 평화공원 및 대북이탈주민 지원단지 건립 지원 사업
21.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360개국과 오대양 내 무풍지대 해양 폐기물 및 해양산업, 폐 플라스틱 제거산업, 사막방지산업, 개도국 터키 방식 국가개발, 바다 위 녹색공원, 에너지제로하우스 및 해양주거 산업조성 사업
22. 녹색기술 실천을 위한 자산운영 컨설팅 및 각 국가 별 왕궁 한국 내 건립 업무
23. 녹색기술 배후단지, 힐링 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의료 관광 포함)과 개도국 기술교육사업
24.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에서 운영하는 녹색기술상품, 효소평, 상품거래소, 국제금융거래소, 은행, 방송국, 온라인 사무국, 대학·대학원 사업(전국 및 360개 국 등록 및 지사를 둘 수 있음)
25.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를 실현하는 새마을

- 운동 실천사업
26.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대학·대학원을 통한 인재육성, 석·박사 논문검증 및 지적재산 발굴, 녹색상품 검증 본부 역할 및 녹색정책대학원 교육 사업
27. 녹색기술 관리감독 교육 검증, 연구 연수원 및 기후환경 오존층 보호를 위한 행정감독, 국제녹색감찰신문 감독권 및 녹색감사, 감찰 지원사업
28. IO-WGCO 및 IO-WGCA (IO-WGCA GLOBAL WHQ) 대행, CCGI 방글라데시 업무대행
29.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 IO-WGCAO (WGCAF/GCA) 업무대행, IO-WGCAF 업무 대행
30.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AF/GCA) 글로벌 세계본부업무를 위한 대륙별 대표부와 각 국가별 본부를 둘 수 있으며, IO-WGCA(WGCO/GCA/WGCAF) 분야별 글로벌 세계대표부 본부와 협조 하여 사업을 이행하며, 이행된 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은 기후환경을 위하여 각 국가와 개도국 최빈국 등 기후환경 오존층보호 녹색기술상품 발굴, 국제금융유치, 국제녹색인증, 녹색 감찰 세계 대사지원 등과 IO-WGCA에 협조하여 세계본부업무 및 지원업무 등 ICC 룰과 IO-WGCA 헌법률을 적용한다.
31. 기후환경 오존층을 보호하고 인류와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약법에서 근거한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법 실천과 각 360국가에 지사를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전세계 녹색기술을 전파하고, UNFCCC 조약법 1213조, 리우협약, 비엔나 협약을 통한 강제조항인 녹색기술실천을 이행하는 IO-WGCA/WGCAF 헌법을 성실히 실천할 사업이행
32. 국제금융거래 유치를 위한 IO-WGCA 업무대행
33.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 / INGO-WGCAF / GCA / WGTO / GTO / 72-SUP ORG / IO-WGCO) 유치문서, 회의록, 이행헌법 원본관리
34.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AF/GCA)의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두바이, 네팔,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8대륙을 포함한 360개국 등록허가문서 IO-WGCA 헌법수탁건과 위 기재된 국가를 포함한 360개국에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 뱅크본부 녹색펀드 발행에 관한 관련서류를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법무법인에서 공증 후, 대한민국 외교부(대한민국 법무 일부 포함) 인증 및 해당국 대사관에 공증 및 인증 후 중앙지방법원 등 설립 등록 국 업무 진행 건에 대한 원본 카피본 수탁 된 문서 통합 관리
35. 각국 360 개국 허가문서 원본 관리, 헌법 수탁과 통합 관리
36. 홍콩을 포함한 360개국 녹색 펀드 발행 문서 통합 수탁 및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 은행업무 및 글로벌 은행 본부 관리
37. 전 세계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공조 조사권을 실시함으로써 기후환경과 인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모든 유기체·무기체에 대한 감독, 감찰, 교육, 감시 업무 및 공동조사
38.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AF/GCA) 72지원글로벌본부 및 1~72지원기구 본부관리
39. 대한민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국가, 국민, 기업, 지방정부의 책무로 규정되어있으며, 중국 정부의 5대정책에는 자국에서 실천하고 있는 법률범위 내에서 녹색정책이 포함되어있고 에너지는 안보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 각 국가와 협약한 FTA에는 대한민국의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조, 5조, 6조, 7조에서 녹색기술상품 실천 책무가 포함되어 있고, 아포스티유 적용대상 국가(TRIPs에서 지적재산권 적용 대상국인 개도국, 최빈국 포함)에 국제녹색인증업무 및 녹색상품 공급업무
40.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와 중국정부 상무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비준한 '중국저탄소산업투자센터'와 모든 녹색정책에 대한 합자, 합작, 협약에 관한 글로벌은행, 개발건설, 물류, 에너지, 의료, 녹색약품, 건강, 힐링 관련 업무
41. 중국 허난성 인민정부와 평딩산시 인민정부와 협약한 녹색물류통합 업무 및 국제 녹색 저탄소 산업, 중국 보건기구 국제녹색업무 합자, 합작, 국제녹색인증된 기업, 녹색상품, 녹색책무 협약에 관한 업무
42.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전세계 회원국가의 국제 및 외국기관과 국제공무 담당자 여권발급 업무 및 관리 업무.
43. 주주명시: 기 국제기구는 지구와 우주의 유, 무기체를 녹색기술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러한 이유로 주주는 이 지구 유, 무기체이다. 단, 등기 임원이나 대표자는 등기 임원, 즉 법인 인격체, 기능적 인격체(주주)를 대신하여 'IO-WGCA 헌법'에 명시한 근거로 한 관리자 일 뿐이다.

〈IO-WGCA/WGCAF를 지원할 72지원기구〉

각 본부별 IO-WGCA 72지원기구

1. WGCA- Energy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01-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01.
2. WGCA- Distribution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02-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02(1-72).
3. WGCA- Industrial Development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03-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03(1-72).
4. WGCA- Products Development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04-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04(1-72).
5. WGCA- Harbor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05-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05(1-72).
6. WGCA-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06-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06(1-72).
7. WGCA- Information Tech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07-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07(1-72).
8. WGCA- Construction Management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08-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08(1-72).
9. WGCA- Agricultural Products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09-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09(1-72).
10. WGCA- Marine Products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10-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10(1-72).
11. WGCA- Water Treatment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11-01-01. CHARITABLE TRUSTS

- ACT(CAP,67)/CHARTER ORG NO,11,(1-72).
12. WGCA- Car Industry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12-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12,(1-72).
 13. WGCA- Shipbuilding Industry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13-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13,(1-72).
 14. WGCA- Mineral Resources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14-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14,(1-72).
 15. WGCA- Railroad Industry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15-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15,(1-72).
 16. WGCA- Aviation Industry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16-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16,(1-72).
 17. WGCA- Housing Industry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17-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17,(1-72).
 18. WGCA- Electronics Industry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18-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18,(1-72).
 19. WGCA- Machine Industry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19-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19,(1-72).
 20. WGCA- Electric Factory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P PERMIT: REG,NO/959/MINUTES NO.7/7-0-20-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20,(1-72).
 21. WGCA- Social Welfare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21-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21,(1-72).
 22. WGCA- Broadcasting Media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22-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22,(1-72).
 23. WGCA- Hydrogen Gas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23-01-01. CHARITABLE

-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23,(1-72).
24. WGCA- Free Economic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24-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24,(1-72).
25. WGCA- Enterprise City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25-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25,(1-72).
26. WGCA- Generation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26-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26,(1-72).
27. WGCA- Power Plant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27-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27,(1-72).
28. WGCA- Road Work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28-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28,(1-72).
29. WGCA- Green Water Park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29-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29,(1-72).
30. WGCA- Engineering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30-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30,(1-72).
31. WGCA- CM PM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31-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31,(1-72).
32. WGCA- Construction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32-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32,(1-72).
33. WGCA- Green River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33-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33,(1-72).
34. WGCA- Green Mountain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34-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34,(1-72).
35. WGCA- Super Markets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35-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35,(1-72).
36. WGCA- Accounting Firm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36-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36,(1-72).
37. WGCA- Law Firm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37-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37,(1-72).
38. WGCA- International Law Firm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38-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38,(1-72).
39. WGCA- Patent Attorney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39-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39,(1-72).
40. WGCA- BigBang Turbine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40-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40,(1-72).
41. WGCA- Green Tech Hunt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41-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41,(1-72).
42. WGCA- Jute Industry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42-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42,(1-72).
43. WGCA- Hemp Industry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43-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43,(1-72).
44. WGCA- Nature Herb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44-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44,(1-72).
45. WGCA- Nature Fruits Project .organization, ING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45-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45,(1-72).
46. WGCA- Agricultural Exchange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46-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46,(1-72).
47. WGCA- Communication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47-01-01. CHARITABLE

-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47,(1-72).
48. WGCA- Domestic Trades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48-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48,(1-72).
49. WGCA- Commerce Trade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49-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49,(1-72).
50. WGCA- SMIS(Small and Medium Industry Support)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50-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50,(1-72).
51. WGCA- SBD(Small Business Development)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51-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51,(1-72).
52. WGCA- PEA(Public Enterprise Association)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52-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52,(1-72).
53. WGCA- MA(Marine Association)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53-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53,(1-72).
54. WGCA- Cooperative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54-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54,(1-72).
55. WGCAF -NSGP (NewSaemaul Green Park) Project .organization, ING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55-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55,(1-72).
56. WGCAF -GOH(Globalization of Hangeul) Project .organization, ING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56-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56,(1-72).
57. WGCA- Policy Education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57-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57,(1-72).
58. WGCA- Technical Education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58-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58,(1-72).
59. WGCA- Training Education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59-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59,(1-72).
60. WGCA- Korea Tourism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60-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60,(1-72).
61. WGCA- Global job Support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61-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61,(1-72).
62. WGCA- The country job Support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62-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62,(1-72).
63. WGCA- MEAW (Mature Employment And Welfare)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63-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63,(1-72).
64. WGCA- SHPEAW(Severely Handicapped Person Employment And Welfare)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64-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64,(1-72).
65. WGCA- GHE(Green Healing Education)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65-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65,(1-72).
66. WGCA- CGTU(world Green Climate Technical University)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66-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66,(1-72).
67. WGCA- CYES(Child Youth Education Support)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67-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67,(1-72).
68. WGCA- CGTLO(Climate Green Tech License Office)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68-01-01.

-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68,(1-72).
69. WGCA- CGFLO(Climature Green Funds License Office)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69-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69,(1-72).
70. WGCA- Culture Healing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70-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70,(1-72).
71. WGCA- Policy Research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71-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71,(1-72).
72. WGCA- Changing cosmos Federation Constitution Project ,organization, IO-WGCA GLOBAL WHQ, PERMIT: REG,NO/959/MINUTES NO.7/7-0-72-01-01. CHARITABLE TRUSTS ACT(CAP.67)/CHARTER ORG NO.72,(1-72).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국제기구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본 국제기구의 IO-WGCA 기후 환경 헌법에 동의하고 목적과 취지에 동의한 360개국과 국제 협약에 동의한 부속, 섬나라 부속, 개도국 등 속령 등 소정의 국제협약에 동의하고 국제협약에 참여한 오세아니아 연방 부속 대표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IO-WGCA 헌법' 과 법률을 근거로 한 'IO-WGCA' 집행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 지방정부, 기업, 국가로 한다.

본 국제기구는 IO-WGCA 기후 환경 헌법에 찬성하는 모든 국가에 자유로이 개방되어 있으며 모든 국가, 기업, 개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G77 회원국, UN 기구, G20 회원국, 개도국, 빈국, 섬나라, 속령, 그 밖의 부속 국가.
2.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녹색에너지 사용과 지구 기후 환경 보존을 위하여 'IO-WGCA 헌법' 에서 제시한 본 국제기구의 어떠한 목적과 규칙을 기꺼이 고수하고 책무를 실천하거나 통신이 되는 국가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모든 국가는 회원국으로 간주하거나 잠재

회원으로 간주한다.

3. 전 세계 'IO-WGCA 기후 환경 헌법' 이 등록된 대륙이나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승인되거나 허가된 회원국으로 인정한다.
4. 기 기탁된 WTO 회원국 내 등록된 12대표부, 14본부, 72지원기구, IO-WGCA 국제문화예술상품거래소, 'IO-WGCA' 국제녹색펀드를 활용한 글로벌 뱅크, 지적권을 근거로 국제표준 녹색 분류 코드 별 국제표준 녹색 검증, 인증된 기술,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하여 선물거래 및 자산관리 등 기후환경 선물거래소를 활용한 운영에 참여한 기업
5. 회원은 각 본부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IO-WGCA 헌법' 목적사업에 저촉되거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행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6.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은 납부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기후 환경 헌법에 대한 부족 국 섬나라 속령 등이 함께 사용하는 기후 환경 헌법 IO-WGCA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반환할 수 없다. 또한 요구할 권리도 없다.

본 국제기구의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 기후 환경 헌법에 의하여 기후 환경 시민의 자격을 갖는다 기후 환경 헌법 이하 시민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 후 심의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IO-WGCA 시민은 회원 가입비 등은 최초 작성되는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IO-WGCA 기후 환경 헌법 이하 법률과 대륙 별 법률에 의하여 각 본부의 내부 규칙 및 규정에 따르며 기후 환경 WGCA 은행 정관 규칙에 의하여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국제기구의 시민으로서 IO-WGCA(WGCA, WGCAF, INGO-WGCA, GCA) 해당 본부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본부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해당본부 집행위원회의 허가의 얻은 후 본부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부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단, 모든 규정은 IO-WGCA 내부규칙과 규정에 따른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본 국제기구의 정관 및 IO-WGCA / IO-WGCAF /

- WGCA 헌법, 헌장, 규범과 규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집행이사회 및 위원회 결의사항의 시행
 3. 회원비 등 제 부담금의 납부
 4. 'IO-WGCA' 지재권 비용 NCNDA IMF PA, ICC를 이나 IO-WGCA 헌법과 규정, 규칙에 의한 국제협약서에 서명된 국제법 적용 범위에 의한 납입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본부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 후 'IO-WGCA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집행위원회에 심의 후 탈퇴할 수 있다.
2. 본 국제기구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상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각 본부 별, 국가별, 대륙별 해당 징계위원회 결의와 집행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의장이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원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포상)

본 국제기구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IO-WGCA 헌법을 성실히 수행하고 실천 하는 자 사회의 기후 환경 기술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타 기관, 단체 또는 협회는 IO-WGCA 기후 환경 헌법 실천 360개국 기 분야 국제 정부로서 각종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각 본부 및 이사회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국제기구는 'IO-WGCA 헌법'과 법률에 의한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의 각 본부 별 대륙 별, 국가별 임원을 둔다.

대표의장, 이사, 주주(IO-WGCA 헌법과 법률에 의한 IO-WGCA 주주 대리인 총의장 외)

1. 총의장 1인 대표의장(집행위원장겸 대표) 1인
2. 사무총장 2인 (회계 법률 담당)
3. 이사 3인~7인(대표의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5. 집행위원 각 15인, 각 분야별 실행위원 15인, 각 분야별

운영위원 15명, 각 위원별 대관, 정부, 행정, 비서 각 1명 등 30인 이내

제11조 (각 본부 및 이사회 임원의 선출)

1. 본 국제기구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본 국제기구 산하 각 본부, 대표부 해당 대표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 선출할 수 있으며 F.D. EBM Global Chairman(설립 집행부 총의장)의 회의 소집으로 참여 인원 과반수로 확정된다.
 - 2) 이사, 감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원의장은 위원 중에서 대표이사 추천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3) 이사는 본 국제기구 내부 또는 회원 중에서 선임하되 외부인사는 각 의장의 추천권에 의해 선임할 수 있다. 단 국제기구 설립집행위원회 F.D.EBM (Executive Board Member) 의장 회의 요청 건에 의해서 본인의 참여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국제기구 각 대표부, 본부 의장 추천권에 의한 글로벌 및 각 분야별 의장 추천으로 그 채용이나 선출을 할 수 있다. 이는, 회의록 7호 이행문서를 근거로 하며 전 세계 360개국 등록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지속된다.
2. 각 본부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IO-WGCA 내부 규칙 및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각 본부 및 이사회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 (각 본부 이사회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국제기구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국제기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 국제기구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자로 임명 받은 대표

자는 IO-WGCA가 임명하는 자이며 기 재산이나 배임 등 위배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징계위원회를 통한 해임과 그 해당 국가에서 내려지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 (각 본부 이사회 임원의 임기)

각 본부 회의에서 선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4년째 도래하는 정기 집행위원회까지로 하며, 감사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각 본부의 이사회 임원의 직무)

1. 대표의장은 각 본부의 집행위원장을 맡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2. 각 의장은 해당 본부를 대표하며 해당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지원의장은 각 의장을 보좌하며, 각 의장은 지원의장 중 1인을 수석 지원의장으로 지명하여 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임원 개,보선 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선거를 관장토록 한다.
4. 감사는 해당 본부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국제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또는 대표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명예의장, 고문, 자문위원, 각 분야별 국제검증위원, 기술, 문화 등 각 분야별 외교대사)

1. 각 본부의 전임 의장을 당연 직 명예의장으로 추대하며 명예 의장은 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각 본부의 검증위원회, 외교대사위원회, 문화대사위원회 등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사회 각계 인사 중에서 본부 발전에 공헌할 수 있고 의장이 승인한 자를 추대하여 집행이사회에 보고한다.
- 1) 대표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이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표의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집행위원회

제17조 (각 본부 및 이사회 구성)

각 본부 및 이사회 집행위원회는 'IO-WGCA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며 각 본부의 국제기구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각 본부의 지원의장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의결된 안건은 IO-WGCA 기후환경 헌법에 의한 집행이사회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각 본부 및 이사회 개 회)

1. 집행위원회는 정기 집행위원회와 임시 집행위원회로 구분하며 대표의장이 집행위원장으로써 이를 소집한다. 단, 회의소집 및 의결은 IO-WGCA 회의록 7호에 근거하여 집행이사회 회의 결과에 따른다.
2. 정기 집행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 집행위원회는 대표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임시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개최한다.
 - 1) 대표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본부의 임시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의 의결 또는 제16조에 의거 구성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 있을 때
 - 3) 글로벌본부 글로벌의장 회의록 7호 의거한 요구가 있을 때

제19조 (각 본부 및 이사회 결의 사항)

각 본부의 집행위원회에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1) 사업계획의 승인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4) 해산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각 본부 및 이사회 정족 수)

1. 집행위원회는 'IO-WGCA' 헌법과 법률 및 회의록 7호에 의거하여 회의소집권자의 승인으로 개의하고 출석

-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의원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5장 각 본부 및 이사회

제21조 (각 본부 및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제1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에 대리참석은 할 수 없다.

제22조 (각 본부 및 이사회 개 회)

본 본부의 이사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개최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단, IO-WGCA 회의록 7호에 의거하여 설립집행위원회 F,D,EBM (Executive Board Member) 의장의 회의소집 승인에 따른다.

제23조 (각 본부 및 이사회 결의 사항)

각 본부의 이사회에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집행이사회 결의사항인 집행에 관한 사항
- 2. 집행이사회에 결의할 안전의 예비심의를 관한 사항
- 3. 규범 및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 조직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국가별 IO-WGCA 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 6. 제 규정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한 사항

본 본부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각 본부 및 이사회 서면결의)

본 국제기구의 공무와 관련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집행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각 본부 및 이사회 의결정족수)

- 1. 각 본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 (각 본부 및 이사회 설립 임원 집행부 이사회 회의 소집)

- 1. 본 국제기구 IO-WGCA 설립 임원 집행이사회는 회의록 7호의 의거하여 설립 임원 집행부 의장의 회의 소집권 요청에 의한 참여 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임명권, 결의권, 집행권, 운영권, 자금 사용권, 회의록 최종결의권, 12대표부, 대륙 별 본부, 14본부, 및 72지원기구 최종회의 사용 동의 권 및 집행권 등 모든 사항이 결정된다.
- 2. 'IO-WGCA'의 헌법이 국제기구이다. 그러므로 헌법 수탁자는 'IO-WGCA' 설립임원 집행부 의장 및 글로벌 의장(F,D,EBM Global Chairman)으로 한다.

제6장 재정

제27조 (재 산)

- 1. 본 국제기구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며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이사회에 서면 보고한다 보고 없는 해당 본부는 각 본부 징계 위원장의 결의에 따른다.
- 2. 기본재산의 처분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 본 국제기구 산하기관 집행위원회는 각 본부의 집행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 / 예산 위원회를 통해서 재정규칙에서 규정하는 시점에 정기예산 집행을 위한 해당 활동의 건적 및 다음 회기 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업무 프로그램 초안을 준비하고 집행이사회에 이를 제출한다.
- 4. 본 국제기구 산하기관 집행위원회는 동시에 집행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기구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 또는 기술의 추가적 개발 및 배포를 지원하기 위해 받는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활동에 대해 제안 및 재무 건적을 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 5. 본 국제기구 산하기관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제안은 프로그램/예산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결정 전에 집행위원회와 함께 논의한다. 해당 제안은 집행위원회와 프로그램/예산 위원회의 상호 동의에 의해서 집행이사회에 보

- 고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승인된다.
6. 프로그램/예산 위원회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기예산 및 운영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수정과 함께 집행위원회가 추천한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
 7. 회원국에 기반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집행위원회는 업무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이에 상응하는 정기예산 및 운영예산(회원의 3분의 2 이상 의결에 의해 확정)을 고려하고 승인한다. 해당 승인은 반드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집행위원회는 집행이사회의 명령 시, 7항에 일치하도록 해당 정기예산 및 운영예산 편성에 맞춰 업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수정할 수 있다.
 9. 필요하다면, 정기예산 또는 운영예산을 위한 보장 또는 수정 권적이 상기 제 3, 4, 5, 6항 및 재정규칙에 일치하여 마련되고 승인된다.
 10. 집행위원장에 의해서 마련되고 승인되는 지출 권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제15조 항목들과 일치하여 고려되지 않은 지출 관련한 어떠한 결의, 결론 또는 수정도 집행이사회의 의해서 승인되지 않는다.
 11. 프로그램/예산 위원회와 각 위원회가 상기 2, 3, 4, 5항과 일치하여 동시에 승인하지 않는다면 집행위원장에 의해서 예상되는 지출과 관련한 어떠한 결의, 결정 또는 수정도 집행이사회의 의해서 승인되지 않는다.
 12. 프로그램/예산 위원회에 의해서 추천되는 모든 합동 활동은 아래의 내용을 강조한다.
 - 1) 회원국의 실행계획과 프로그램을 제후 시키는 생물 다양성 전략 및 실행 계획에 대한 통합 활동, 회원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내용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적용, 지속 가능한 개발, 빈곤퇴치, 개발도상국의 능력 배양, 정보 시스템, 제도적 배열의 국가적 전략을 포함하는 기타 관련 프로그램, 국가차원의 에너지부문 조정기구와 국제기구 각 기관 대표 사이의 합동 계획 활동.
 13. 프로그램/예산 위원회는 아래의 내용을 진행한다.
 - 1) 국가차원에서 좋은 관계가 되는 상호 협력 프로젝트 및 그 발전에 대한 범주 발굴
 - 2) 기술개발 및 그 기술의 공유를 위한 전략적 계획 및 조직화
 - 3) 국가적 및 지역적 상호 협력 연구회 조직 및 상호 협력 연구 추구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4) 관련 주주 간 훈련과정 및 인지
 - 5) 상담,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에 개발도상국 및 소수의 선진국, 현지공동체, 비정부조직 및 사적부문을 포함한 관련 주주의 적극적 참여
 14. 본 국제기구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및 자원 고갈의 결과에 대해 계획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그 중에서도 연구개발위원회에 의해 문서화된 기존의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15. 회원국 분담금
 - 1) 정기예산 지출은 프로그램/예산위원회가 제시하는 예산안에 대해 집행이사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프로젝트에 대해 각 회원국에 분배된 납입금 및 집행위원회가 배분한 분담률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 2) 회원국 분담금은 회원국의 크기, 회원국의 발전 상태 및 녹색의 저 탄소 무한 에너지, 에어 엔진, 수소기술 등 국제표준녹색분류코드별 전 분야에 대한 국제녹색 기술상품 실천의 전환 노력에 관한 것이며, 해당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지원 및 기술지원에 따라서 재무/계획위원회가 산출하는 기부금의 형태를 띈다.
 16. 국제기구에 대한 자발적 기부
 - 1) 본 국제기구는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의 혁신적 변화 및 각 회원국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업무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이행은 그 변화를 원하는 국가들 및 기구들로부터 재정, 기술 및 인적 자원의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따라서 이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 각 나라에 에어엔진, 무한에너지, 수소 생산 및 사용 기술 전도를 지원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당사자, 기타 정부, 국제기구 및 관련 주주들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
 - 2) 국제기구의 재정규칙에 따라, 기구를 대신해 집행위원장은 선물, 유산 및 신 저탄소 녹색에너지 채택, 적용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회원국에 의한 지원자금 및 정부, 비정부 기구, 기타 비정부 관계 당국에 의한 보조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단, 그러한 자발적 기부는 본 국제기구의 목적과 정책을 일치하여야 하며 집행이사회의 회의결과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연구 및 개발 자금

본 국제기구는 사적 부문, 상기 14조 및 16조에서 규정된 심층 기술개발, 배포에 관심이 있는 회원국으로부터의 기부금을 포함하여 본 국제기구의 기술개발 및 배포 업무를 통해 조달되는 기술투자개발기금을 보유한다.

18. 투명성

회원국 내 에어엔진, 무한에너지, 친환경 의식주,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탄소 녹색기술의 성공적인 사용 등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 실천 및 적용에 대한 모든 'IO-WGCA'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보고서는 공표되고 가능하다면 일반 대중과 함께 공유한다.

19. 본 국제기구 산하기관 집행위원회는 기금운동을 관리하는 종합적 정책 지침(감시 및 평가지표 관련 기관 CCGI, GGG과 함께 IO-WGCA 사무국 또는 집행이사회를 대신하여 산하기관에 의해 제정)에 따라서 해당 기술투자개발기금을 관리한다.

제28조 (세입 등)

1. 본 국제기구는 다음의 세입으로 충당한다.

- 1) 회비등 (지재권 사용 개인회비, 지재권사용 기업회비, 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자격, 디자인, 상표, 학위, 국제수의계약 확인, 자산 및 기업평가, 기후환경세계선물 거래소 운영시 인증된 국제표준 녹색분류코드별 지재권 수입, CCGI, GGG, SPC 운영에 따른 지재권 등)
- 2) 보조금
- 3) 찬조금
- 4) 제4조 2항에 의한 국제기부금품 모집(대륙 별 등록 된 법인은 전 세계 어느 국가 에서든 기부 금품 등 회비 운영비를 국제법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5) 제4조 2항에 의한 수익사업 수익금(대륙 별 등록 된 법인은 전 세계 어느 국가 에서든 기부 금품 등 회비 운영비를 국제법에 따라 받을 수 있다.)

2. 본 국제기구는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 임원 집행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제적 후원을 들 수 있으며 국제협약에 의하여 협약 된 NCNDA IMF PA 의하여 ICC 룰과 IO-WGCA기후환경 헌법에 의하여 유럽연합 국제법 재판소나 아프리카연합 국제법 재판소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인권 문제로 기후 환경 헌법 책무 수행 방해 등 공무 수행 중 일어난 해당 국가 부당한 대우 등은 담당 정부 기관 공무원은 모두 전 세계 외교부에 공지하여 불이익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전 세계 국가에 공지하여 그 책임을 자식까지 전가 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국제기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 (회계 및 운영감사)

1. 본 국제기구의 전 세계 각 기관의 감사는 해당 기구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년 2회 감사한다.
2. 회계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외부감사로 정한다.
3. 외부감사는 회계사(법인)을 통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4. 모든 자료는 최종 설립임원집행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장 본부조직 및 사무처

제31조 (IO-WGCA GLOBAL WHQ 본부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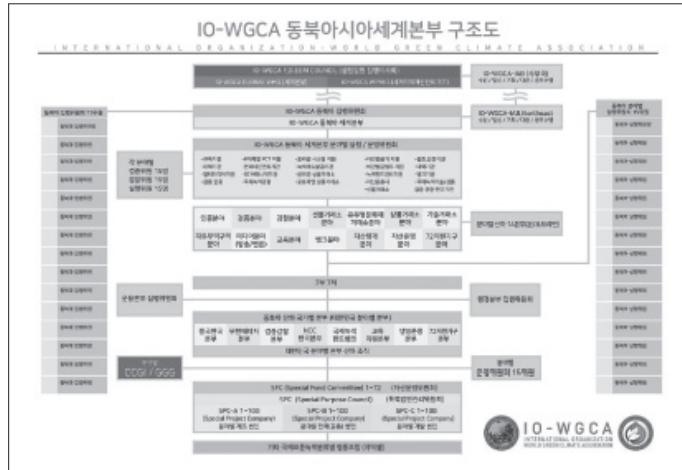
본 국제기구 본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 분야별 국제로펌, 12이사회, 14본부, 7부 7처, 대륙 별 국가별 CCGI, GGG, 집행위원회, 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각 사무처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IO-WGCA' 조직 구조에 따라 'IO-WGCA 설립임원집행부, 국가별 집행위원회, 실행위원회(행정본부), 운영위원회(사업관련법인) 규정 및 규범으로 정한다.

제32조 (각 행정본부 설치)

본 국제기구의 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IO-WGCA' 산하 각 기관(IO-WGCA 12대표부, IO-WGCA 14본부 등)은 각 집행위원회, 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각 사무처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IO-WGCA' 헌법과 규정 및 규범으로 정하고 WGCA 은행 헌법 정관으로 한다.

제33조 (각 본부 직원)

본 국제기구의 각 행정본부에는 WTO 회원국을 포함한 360개국 지원을 위한 사무총장 1인과 직원 3명 이상 15명 내, 외의 인원을 두며 기구의 각 본부 별 업무 구조도는 다음에 예시된 대륙 별 구조도(IO-WGCA 동북아 세계본부)를 참조하여 별도 작성하여 집행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4조 (사무총장 등)

1. 본 국제기구 각 분야별 사무총장은 각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위원장이 임명하되 최종 승인은 IO-WGCA 회의록 7호를 근거한 글로벌 의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근무지는 각 행정본부이다.
2. 각 분야별 사무총장은 각 집행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각 본부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 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과 행정위원회의 자격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집행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5조 (보수)

1. 본 국제기구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글로벌 의장, 각 분야별 의장, 지원기구 위원장, 감사, 이사의 보수는 각 본부별 직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보수액에 대한 기준은 별도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 (해산)

본 국제기구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IO-WGCA'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임원집행이사회에서 각각 참여인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해산신고서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3.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개요
4. 해산 당시의 정관
5. 해산을 결의한 집행이사회 회의록

제37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본부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집행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38조 (청산종결의 신고)

본 본부의 해산 시 청산인은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정관 변경)

IO-WGCA 헌법(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임원 집행이사회에서 참여인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규정 및 내규)

본 국제기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IO-WGCA' 헌법, 헌장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하되 실천사항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규범 및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 시행상 필요한 내규나 지침은 회의록 7호를 근거로 설립임원집행이사회 회의 후 정한다.

이 헌법(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국제기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립임원집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인장관리 등)

본 국제기구의 등록된 인장 및 주요 문서는 집행위원회에서 이사 중 1명을 지명하여 관리하고 글로벌의장이 감독권을 갖는다.

제42조 (전자공시 등)

본 국제기구의 집행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집행위원회 및 집행이사회 결의사항 등은 기구의 공식 온라인 오피스나 IO-WGCA F,D,EBM 공문 공시 소통 밴드를 통하여 전자 공시하며 개별 통지 사항은 본부에 신고된 이메일로 통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 (준 용)

본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처리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설립 임원 집행이사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기후 환경 중재 재판소가 설립 전에는 유럽 아프리카 등 국제 재판소에서 재판하기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헌법(정관)은 국제기구 IO-WGCA가 오세아니아 연방 피지에 국제공익신탁법에 따라 정부간 국제기구 및 기후환경 헌법을 수탁한 201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하며 기법인이 대한민국에 등록된 날인 2013년 12월 16일을 본 국제기구(IO-WGCA/IO-WGCAF/WGCA)의 전 세계 전과를 위한 시작일로 확정한다.

제2조 (설립 당시의 임원선임 등에 대한 경과조치)

1.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헌법(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은 제16조에서 정한 대의원으로 본다.
3. 설립 당시 설립 임원 등은 헌법, 헌장, 선포문 등록 12항 명시와 같이 360개국 등록이 다 될 때까지 자식이나 그 가족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설립 당시의 인장)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다음과 같다.



제4조 (IO-WGCA 규범 및 규정 등)

법인 설립 당시 'IO-WGCA 집행이사회'에서 제정한 "IO-WGCA 조직 및 위원회 규범 및 규정"은 설립임원집행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하고 금융위원회에 관한 규범 및 규정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특별 조항)

1. 본 국제기구의 법인은 'IO-WGCA (WGCA / WG-CAF)'의 회의록 7호 (F,D,EBM 명단 등 EBM 관련사항) 결의 사항 및 헌법과 헌장에서 제시한 국제녹색기후환경 실천을 위한 지침을 준수한다. (첨부서류: 회의록 7호, 12호, 7호에 첨부된 이행문서, 구조도, 각종 허가서, 헌법, 헌장, 정관은 설립임원 집행부 참여인원 과 반수로 설립승인)
2. 유엔을 포함한 국제 비정부기구 관련 사항
본 국제기구는 철도산업, 항공산업 및 육상운송과 같은 주요 산업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UNDP, UNEP, UNESCO, UNESCAP, ILO, UNIDO 등 기타 주요 국제연합 기구들과 관계를 수립한다.
3. 행위능력, 특권 및 면책
IO-WGCA (INGO-WGCA/WGCAF/GCA) 집행, 실행, 운영 및 회원국의 각 국가의 국내법 적용은 법인이 등록된 경우부터 유엔헌장에 기록된 법인격이 등록된 법령에 의하여 법인격의 지위를 누린다. 이러한 법인격은 국제기구가 조달계약, 자산취득 및 각 국 법원의 개별법 권리처럼 수많은 실질적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4. 국제기구로서 'IO-WGCA'가 등록된 각 국가의 모든 본부는 본 기구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회원국 영토 내에서 법인격에 주어진 목적사업에 대한 그 특권과 면책권을 누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 1) 본 국제기구는 법인격 목적사업에 주어진 유엔 헌장

100조, 105조 외 국가별 허가된 법인적 목적사업인 IO-WGCA 헌법 실천을 위한 법인적 목적 사업에서 주어진 국제표준녹색기술 전 분야의 포괄 적 공무 수행을 위하여 지구와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IO-WGCA 헌법, 헌장'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IO-WGCA의 임무 등 전 세계는 강제성 있는 국제표준녹색기술을 실천하고 동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조약법에서 근거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녹색성장에 대하여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정부 (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기업(사업자)의 책무', 제7조 '국민의 책무', 제8조 '다른 법에 우선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2) 'IO-WGCA 기후환경 헌법'이 등록된 각 국의 해당 본부 대표자들은 해당국의 법률에서 인정하는 국제공무 수행범위 내에서 법인격에 주어진 외교면책권을 가지고 'IO-WGCA 기후환경헌법' 이행에 대한 책무를 실천하는 것으로 한다.
- 3) 'IO-WGCA' 각 본부와 각 지원기구는 본 국제기구와 연계된 기능의 독립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책권을 가진다.
5. 상기 1, 2, 3항에서 언급된 녹색책무에 대한 행위능력, 특권 및 면책권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1) 'IO-WGCA' 회원으로 가입하고 본 IO-WGCA헌법의 책무에 동의한 모든 IO-WGCA 회원국 영토 내 녹색 책무 범위 공무 수행
 - 2) 'IO-WGCA'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대신 지구 회원국의 권리, 특권 및 면책권과 관련한 IO-WGCA 헌법의 책무에 동의한 국가의 영토 내.
 - 3) 해당 회원국이 헌법 내 본 기구의 권리와 특권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향을 수탁인에게 문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는 'IO-WGCA 헌법'의 해당 규정 적용이 회원국 내에서 중지된다.
6. 'IO-WGCA' 는 아래 항에 대해 구체적 법적 자격을 강조하고 "법적 인격체"인 "기능적 인격체"성격을 가진다.
 - 1) 계약
 - 2) 부동산, 동산의 취득 및 처분
 - 3) 법적 소송 제기
7. 'IO-WGCA (INGO-WGCAF/WGCA)'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국제연합의 당사자로서 국제법에 대한 개별법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을 제정한다.
8. G77 및 WTO 회원국의 전 세계 국가 회원으로 하는 총체적 기능 본위의 기구로서 'IO-WGCA'는 재산, 기금, 자산, 및 '법인격체'와 관련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

책권 규정 제 1, 2, 3, 4조에 의해 국제연합의 재산, 기금, 자산과 관련한 특권과 면책권을 누릴 수 있다.

9. 'IO-WGCA' 는 어디에 위치하든, 누가 보유하든 관계 없이 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그 면책권을 명백히 포기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 외는 모든 법적 진행으로부터 면책권을 누릴 수 있다. "어떠한 면책권 일지라도"라는 의미는 그 실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까지를 말한다. 모든 사항은 회의록 7호에 근거하며 헌법, 헌장의 변경 불가조건으로 수탁된 것이다.

별첨 - 기후환경 중재재판소 설치 및 조정위원회 관련 규칙

제23조 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 모든 회원들이 달리 동의하지 않거나 제23조 1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되지 않거나 제23조 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으면 다음 규칙이 중재재판소 및 조정위원회의 규칙과 절차를 지배한다.

분쟁해결 절차의 개시 설치

(아래와 같이 각 국가에 설치하며 기후환경 중재재판소는 대한민국에 설치한다.)

1. 불 일치하는 결정에 의한 분쟁 당사자들은 적절하게 4 명의 중재자 또는 4명의 조정자를 임명하고 그들 한 명을 재판 또는 조정의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2. 1항에서 윤곽이 그려진 바와 같이 조정 또는 중재위원들이 분쟁해결 절차 개시 후 3 개월 내에 임명되지 않으면 분쟁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집행의장이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설립임원 집행부 의장 및 각 상임집행이사를 포함하는 회원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 및 조정자로 행위하도록 지명한다.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 내에 공석이 발생하면 IO-WG-CA 헌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임원집행이사회 회의 결과에 따라 1개월 내에 공석을 채운다.

절차 및 운영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는 고유의 절차와 운영을 결정한다.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 위원은 본 기구의 재무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상임집행이사는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어떠한 비서관도 제공한다.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아닌 본 기구가 부담한다.

판결 및 보고

중재재판소는 판정으로 그 소송절차의 결론을 내리고 이는 분쟁당사자 모두를 구속한다.

중재위원회는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제출될 보고서를 준비함으로써 소송절차의 결론을 내린다. 보고서는 분쟁당사자들이 심각하게 고려할 권고사항을 포함한다.

IO-WGCA F.D. EBM, 집행이사회는 이로써 본 헌법과 IO-WGCA/INGO-WGCA/WGCAF/GCA 고유적인 특권과 면책조항에 동의하며 이러한 사실은 공증된 회의록 7호~12호에 근거하여 영원히 취소변경불능이다.

* 각 국가별 멤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국제기구IO-WGCA (INGO-WGCA/WGCAF) : 45명 (집행, 실행, 운영위원회 각 15명씩)
- 72지원기구 : 각 기구당 45명 (집행, 실행, 운영위원회 각 15명씩)

특별조항

1. 'IO-WGCA' 디자인 매뉴얼
2. 'IO-WGCA' 구조도
3. 개인 및 기업 가입신청서
4. 설립임원 및 본부 대표 임명장, 멤버인증서
5. 본부 설립 허가서
6. 은행 헌법 정관
7. 유럽 에너지 법
8. 각 본부 별 내규
9. 국제 협약서 (섬나라 부족국가 속령등)
10. 국가별 헌법 책무 동의서.
11. 각 해당 기관별 국가별 운영 특별법
12. IO-WGCA기후환경선물거래소 운영 방안 / IO-WGCA기후환경선물거래소 운영을 위한 국제협약
13. 일대일로 세계운영방안 (국제표준녹색인증(IO-WGCA IGC) 시스템을 통한 기후환경선물거래소 운영방안)

IO-WGCA 기후환경 헌법 오세아니아 연방 부족국가 및 섬나라 시행일 2013년 6월 18일

주 주 : 박 연 실 P/N: M09494354 ('IO-WGCA' 명의 주주 대리인)
 직 책 : IO-WGCA CEO / F.D.EBM / IO-WGCA EDUCATION CHAIRMAN
 CODE : F.D.EBMBPIACAO8359K9494354G

 (인)


주 주 : 김 성 민 P/N: M51947967 ('IO-WGCA' 명의 주주 대리인)
 직 책 : F.D.EBM / IO-WGCA BROADCASTING & DESIGN DIRECTOR
 CODE : F.D.EBMSGIACZO7181K1947967G

 (인)


주 주 : 이 우 승 P/N: M11340616 ('IO-WGCA' 명의 주주 대리인)
 직 책 : F.D.EBM CHAIRMAN / IO-WGCA GLOBAL CHAIRMAN
 CODE : F.D.EBMFIIFZO7885K1340616G

 (인)


“IO-WGCA 주주는 이 푸른 지구와 우주의 유, 무기체이다”



IO-WGCA
 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O-WGCA-IAB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